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7. 8. 28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여비조례증 일부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여비종류를 일부개정하여 업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,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개정하고 식탁료를 삭제함 (제2조)

나. 국내여비정책, 현장지도여비, 이전비,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조항을 삭제하여 이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, 개정토록 하는것임
(삭제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신설 제4조)

3. 관계법령 :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여비의종류) 여비는 운임, 일비, 숙박료, 식비, 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한다.

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준용규정) ①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,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국내여비규정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16조 제3항의 “소속장관”을 “구청장”으로 본다.
2. 동 규정 제8조 제3항, “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“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3. 동 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 중 “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”의 규정은 “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의 별표 1”로 본다.
4. 동 규정 제17조 제2항 중 “동일시·군 및 도서”를 “부산광역시”로 본다.
5. 동 규정 제23조 제3항 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”으로 본다

6. <별표1>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“전문직 공무원규정”을 “지방 전문직공무원 규정”으로,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“공무원 보수 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 보수규정”으로 본다.

②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,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국외여비규정 제8조 제1항, 제21조, 제26조 제4항 중 “소속장관”을 “구청장”으로 본다.
2. 동 규정 제24조 제1항 단서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”은 “지방 공무원법 제63조 제2항”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여비의종류) <u>여비는 운임, 현지교통비, 숙박료, 식비, 식탁료,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.</u>	제2조(여비의종류) <u>여비는 운임, 일비, 숙박료, 식비, 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한다.</u>
제3조(국내여비정액) <u>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(별표1)여비지급구분표 및 (별표2)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.</u>	제3조(국내여비) <u>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(별표1)여비지급구분표 및 (별표2)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.</u> 〈삭 제〉
제4조(월액여비) (생략)	제3조(월액여비) (현행 제4조와 같음)
제5조(현장지도여비)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제104조제4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.	제3조(월액여비) (현행 제4조와 같음) 〈삭 제〉
제6조(이전비)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	제3조(월액여비) (현행 제4조와 같음) 〈삭 제〉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아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(별표3) 이전비 정액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전부</p> <p>2.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1 상당액</p>	<p>제7조(근무지내출장의 현지교통비) 근무지내 출장시 여행거리가 8킬로미터이상 12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이상 4시간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(별표4)의 현지교통비 정액의 5할을,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.</p> <p>다만, 여행거리 1킬로미터미만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에 관계없이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
<p>제8조(준용규정)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규정</p>	<p>〈삭 제〉</p>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을. 국외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제4조(준용규정) ①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,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내여비규정 제8조 제1항, 제3항 및 제16조 제3항의 "소속장관"을 "구청장"으로 본다. 2. 동 규정 제8조 제3항, "재정경제원 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"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"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"는 없는 것으로 본다. 3. 동 규정 17조 제1항 단서중 "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"의 규정은 "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의 별표1"로 본다. 4. 동 규정 제17조 제2항중 "동일 시·군 및 도서"를 "부산광역시"로 본다.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	<p>5. 동규정 제23조 제3항중 "국가 공무원법 제71조 제2항"은 "지방 공무원법 제63조 제2항"으로 본다.</p> <p>6. <별표1>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종 "전문직 공무원규정"을 "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"으로,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"공무원 보수규정"은 "지방공무원 보수규정"으로 본다.</p> <p>②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,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외여비규정 제8조 제1항, 제21조, 제26조 제4항 중 "소속장관"을 "구청장"으로 본다. 2. 동 규정 제24조 제1항 단서중 "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"은 "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"으로 본다.